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0. 7. 21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7월 10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7월 13일

라. 상정일자: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7. 20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지우선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보상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 및 표현 정비(안 제1, 6조)
-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신설(안 제1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선영)

- 본 건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보상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임.
  
- 주요 내용으로
  - 안 제19조에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
  - 그 밖에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  
- 본 조례안은 개정된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7. .  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**재해보상 조항을 신설**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및 표현 정비(안 제1, 6조)
- 나. **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신설(안 제19조)**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일법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0. 5. 28. ~ 6. 17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 및 제65조”을 “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 및 제65조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단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”을 “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,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재해보상) ①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.

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
2. 장해보상: 해당 단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
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

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

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제2항 별표4와 같다.

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은 「민법」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, 유족 중 동순위자(同順位者)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,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 시에 대표자 선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: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2.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: 법정대리인(민법에 따른 후견인을 포함한다)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3. 성년인 위임자에게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: 위임자 본인 및 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⑥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요양 [ ], 장애 [ ], 장제 [ ], 유족 [ ] 보상청구서

※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※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사고자	소속	전화번호
	주소	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청구인	주소	전화번호
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사고자와관계	
사고경위 및 요양	사고(사망)일시	
	사고(사망)장소	
	사고경위 1. 화재 【   】   2. 구조 【   】   3. 구급 【   】   4. 기타 【   】	
	요양(진단)병원	요양(진단)부위
	요양(진단)결과	요양기간
청구금액	요양보상	장해보상
	장제보상	유족보상
	청구금액	
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.

년   월   일

청구인 : (서명 또는 인)

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.

년   월   일

단장 : (서명 또는 인)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**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제출서류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, 2. 장애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 3. 장제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,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내역서 각 1부. ② 장애증명서류 1부.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. ⑦ 통장사본 1부.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요양·장애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제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· 인감증명서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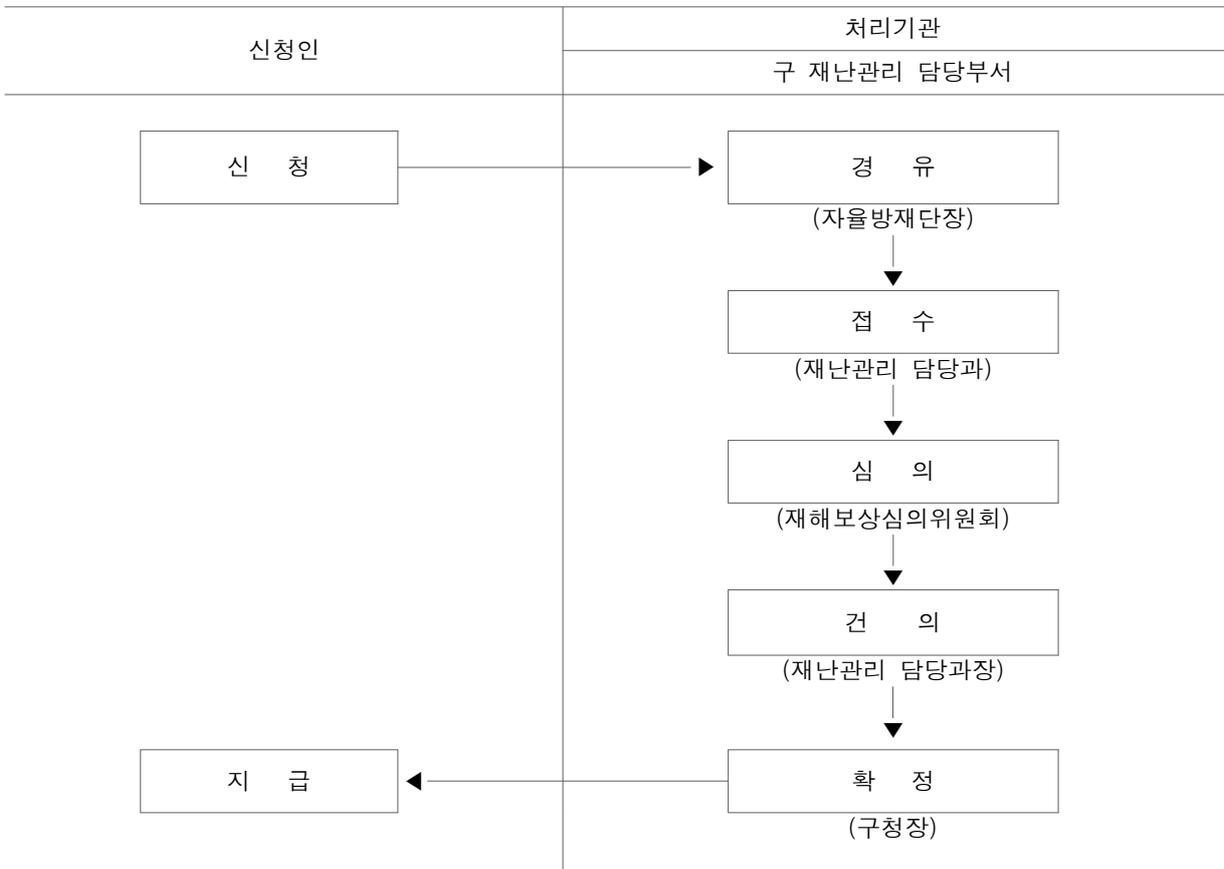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처리절차**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<u>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 및 제65조</u>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해임) <u>단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</u>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제61조, 제62조 및 제6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해임) <u>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9조(재해보상) ①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.</u></p> <p><u>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</u></p> <p><u>2. 장해보상: 해당 단원의 장애 정도가</u></p>

확정된 날

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

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규칙」 제27조의3제2항 별표4와 같다.

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은 「민법」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, 유족 중 동순위자(同順位者)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,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 시에 대표자 선정서와

제19조 (생략)

<신설>
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: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2.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: 법정대리인 (민법에 따른 후견인을 포함한다)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3. 성년인 위임자에게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: 위임자 본인 및 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

⑥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.

제20조 (현행 제19조와 같음)

[별지 제1호 서식]



( 뒤 쪽 )

제출서류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, 2. 장해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 3. 장제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,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 ①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비추서각1부. ②장해증명서류1부. ③사고발생 경위서1부. ④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취자진술서 등) 1부. ⑤사망진단서(사망증명서) 1부. ⑥장제사실 증명서1부. ⑦통장사본 1부. ⑧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요양·장해보상(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) 장제·유족보상(가족관계증명서·인감증명서)	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동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처리절차**

